제품(서비스) 판매 계약서

주식회사 비에스지 파트너스(이하 "공급자")과 주식회사 프론티어 리테일(이하 "구매자")은 2025 년 7월 15일,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품(서비스) 판매 계약(이하 "본 계약"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"공급자"가 "구매자"에게 제 2 조에 명시된 제품 또는 서비스(이하 "본건 제품 등")를 공급하고, "구매자"는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계약의 대상)

"공급자"가 "구매자"에게 공급하는 "본건 제품 등"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. 상세한 규격 및 사양은 [별지 1] '제품(서비스) 명세서'에 따른다.

- 1. 제품(서비스)명: 'Nexa-POS' 스마트 판매 관리 솔루션
- 2. 수량: 1 식 (5 라이선스 포함)
- 3. 단가: 금 삼천만원 정 (₩30,000,000), 부가가치세 별도
- 4. 총 계약금액: 금 삼천만원 정 (₩30,000,000), 부가가치세 별도

제 3 조 (대금 지급)

- 1) "구매자"는 "공급자"에게 "본건 제품 등"의 총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.
 - * 계약금: 금 일천오백만원 정 (₩15,000,000), 2025 년 7월 22 일까지
- * 잔금: 금 일천오백만원 정 (₩15,000,000), 제 5 조에 따른 검수 완료 후 10 영업일 이내
- 2) 모든 대금은 "공급자"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* 은행명: 신하은행
 - * 계좌번호: 110-123-456789
 - * 예금주: 주식회사 비에스지 파트너스

제 4 조 (납품 및 인도)

- 1) "공급자"는 "본건 제품 등"을 2025 년 8 월 15 일까지 "구매자"가 지정하는 아래의 장소에 설치 및 납품하여야 한다.
 - * 납품 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(프론티어 리테일 본사)
- 2) 납품 및 인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(운송비 등)은 "공급자"의 부담으로 한다.
- 3) "본건 제품 등"의 소유권은 "구매자"가 제 3 조의 잔금을 완납한 시점에 "공급자"로부터 "구매자"에게 이전되며, 위험 부담 책임은 "구매자"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"구매자"가 부담한다.

제 5 조 (검수)

- 1) "구매자"는 "공급자"로부터 "본건 제품 등"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**10 영업일** 이내에 수량, 규격, 상태 등을 검수하여야 한다.
- 2) 검수 결과 하자 또는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, "구매자"는 즉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"공급자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3) "구매자"가 제 1 항의 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, "본건 제품 등"은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4) 검수 불합격 시, "공급자"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교환, 수리 또는 재작업을 통해 완전한 제품을 재납품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하자보수)

1) "본건 제품 등"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제 5 조의 검수 합격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한다.

2) "공급자"는 제 1 항의 기간 내에 "구매자"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"구매자"로부터 보수 청구를 받은 경우,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
-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고,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파산,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 - 3.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
- ②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,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손해 배상)

- 1)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 다만, 어떠한 경우에도 "공급자"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"구매자"가 "공급자"에게 실제 지급한 총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2) "공급자"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4 조의 납품 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, 지체일수 1 일당계약금액의 1/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"구매자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비밀유지)

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,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10 조 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

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, 의무 또는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, 위임,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11 조 (불가항력)

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전염병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, 해당 당사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.

제 12 조 (분쟁의 해결)

- 1)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- 2) 제 1 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,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13 조 (기타)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[별지 1] 제품(서비스) 명세서

2025년 7월 12일

공급자: 회사명: 주식회사 비에스지 파트너스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

대표이사: 홍길동 (인)

구매자:

회사명/성명: 주식회사 프론티어 리테일 주소:
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이사/성명: 김민아 (인)